

의안번호	2209794
의 회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6. 9.
추계번호	25A2316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1호(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)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·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(제1항) －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”을 추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·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(제2항제11호) －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에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”을 추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1호(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석유관리원”)의 사업 범위에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”을 추가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되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
 - 석유관리원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¹⁾에 따라 2024년 1월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소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수소 운송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* [참고자료] 한국석유관리원(수소유통전담기관)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현황
 - 개정안은 석유관리원의 사업을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기 실시 중인 위 사업을 포함하여 수소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나 수소 외의 다른 신에너지원 분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한다면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과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탄소중립 관련

1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34조(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(...)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·유통 관리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(...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

2.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

3.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

4.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·점검·지도 및 홍보

5.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·제공

6. 그 밖에 수소의 수급·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사업이 확대된다면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
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석유관리원의 사업이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정 지원 기준과 범위 등 추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,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도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의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현재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석유관리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2025년 기준 총 58억 6,900만원임

- * [참고자료] 한국석유관리원(수소유통전담기관)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현황

- 이에 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에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”을 추가하는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한국석유관리원(수소유통전담기관)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현황

- 사업명(코드):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(5203-302)
- 회계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
- 소관: 산업통상자원부
- 사업근거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- 사업추진체계
 - 사업시행방법: 보조(민간정상보조)
 - 사업시행주체: 한국석유관리원(수소유통전담기관)
 - 사업 수혜자: 수소시장 거래 참여자(공급자, 충전소 사업자, 수소차 이용자)
- 2025년도 예산: 58억 6,900만원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2025년도 예산
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	수소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수송용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매비를 지원	2,453
수소 거래시스템 및 유통정보시스템 운영	· (수소 거래시스템) 수소 공급자와 충전소가 수소를 매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거래플랫폼 운영·관리 · (수소 유통정보시스템) 수소차 이용자를 위해 수소 충전소 운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유통정보시스템 운영·관리	1,395
수소 수급통계 및 수급계획 수립	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수급실적과 향후 수급계획을 조사하고,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 목표 이행을 위한 장기 수소 수급계획 수립	360
수소 유통질서 및 신고센터 운영	불법행위 방지 및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수소 유통시장 감시·점검·지도·홍보 및 고객만족센터 운영	1,661
합계		5,869

○ 사업 집행절차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